

요약

양형위원회는 2024. 8. 12.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하였음. 수정안에서는 사기범죄의 권고형량범위를 상향 조정하고 공탁 관련 양형인자를 정비하였으며 집행유예 기준을 강화하였음. 또한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양형인자를 수정하였는데, 보험계약에서의 고지의무 불이행을 특별감경인자에서 제외하고,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한 경우를 가중인자로 삼기로 함

○ 양형위원회는 최근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하였음

-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4. 8. 12. 전체회의를 열어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하였음
 - 형을 정할 때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양형위원회는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함
 - 2024. 4. 29. 양형위원회 회의를 통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기에 대해서도 사기범죄 양형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데 이어, 이번엔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대해 권고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을 심의하여 수정안을 마련한 것임
 - 다른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안들이 마련되면 2025. 1. ~ 2.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2025. 3.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하는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임¹⁾

○ 사기범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으로는 권고형량범위의 상향 조정, 공탁 관련 양형인자의 정비, 집행유예 기준의 강화 등이 있음

- 사기범죄 양형기준에서는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의 규모에 따라 형량을 권고하고 있는데, 그 중 일부 구간에 대한 상한을 상향 조정함
 - 일반사기와 조직적 사기 각각에 대해 소유형 3(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가중영역의 상한, 소유형 4(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와 소유형 5(300억 원 이상)의 기본영역 및 가중영역의 상한을 상향 조정함
 - 사기범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의 법 감정, 보험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편입 등을 고려한 것임

1) 양형위원회(2024. 8. 12), 「양형위원회 8/12(월) 제133차 회의 결과」

〈표 1〉 권고 형량범위 수정안

1. 일반사기				
유형	내용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 1년	6월 - 1년 6월	1년 - 2년 6월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0월 - 2년 6월	1년 - 4년	2년 6월 - 6년
3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년 6월 - 4년	3년 - 6년	4년 - 7년 -8년
4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3년 - 6년	5년 - 8년 -9년	6년 - 9년 -11년
5	300억 원 이상	5년 - 9년	6년 - 10년 -11년	8년 - 13년 -17년
2. 조직적 사기				
유형	내용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1년 - 2년 6월	1년 6월 - 3년	2년 6월 - 4년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년 6월 - 3년	2년 - 5년	4년 - 7년
3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2년 - 5년	4년 - 7년	6년 - 9년 -11년
4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4년 - 7년	6년 - 9년 -11년	8년 - 11년 -17년
5	300억 원 이상	6년 - 10년	8년 - 13년 -15년	11년 이상, 무기

자료: 양형위원회(2024. 8. 12), 「양형위원회 8/12(월) 제133차 회의 결과」

- 양형인자²⁾ 중 감경인자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삭제함
 - 현행 양형기준상으로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이 특별감경인자,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이 일반감경인자로 규정되어 있음
 - 공탁은 피해 회복 수단 중 하나에 불과한데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로 인하여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 문구를 삭제하려는 것임
 - 대신, 위 감경인자에 대한 정의 규정에서 “다만 공탁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의사,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포기 의사 등을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라는 단서 문구를 추가함
-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에서 제외함
 - 현행 양형기준상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가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하며, 해당 감경인자에 대한 정의 규정에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피해자가 향후의 부당한 이득을 노리거나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정도의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2) 양형기준에서는 양형인자를 감경인자와 가중인자로 구분하고, 또한 양형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로 나누고 있음. 먼저 가중인자는 책임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감경인자는 책임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함. 다음으로 특별양형인자는 당해 범죄유형의 형량에 큰 영향력을 갖는 인자로서 권고 영역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인자를 말함(권고 형량 범위에서 감경 영역, 기본 영역, 가중 영역 중 어느 영역이 적용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임). 일반양형인자는 그 영향력이 특별양형인자에 미치지 못하는 인자로서 권고 영역을 결정하는 데에는 사용되지 못하고 결정된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데 고려되는 인자를 말함

- 이 중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한 경우'를 삭제하는 내용인데,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본능을 이용하는 사기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추구했다는 사정을 감경인자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임

- 집행유예의 기준을 일부 강화함

- 조직적 사기 유형에 대한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로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를 새롭게 추가하고, 조직적 사기 유형에까지 적용되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인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를 일반사기 유형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제한함

○ 수정안에서는 보험사기 관련 양형인자 정비에 관한 내용도 일부 담고 있음

-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의 기망행위를 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에서 제외함

- 현행 양형기준상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가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하는데, 해당 감경인자에 대한 정의 조항에서 그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나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편취한 경우'를 규정하면서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의 기망행위를 한 경우'도 이에 포함시키고 있음

- 그러나 고지의무 위반을 통한 부작위에 의한 보험사기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기망행위와 비교하여 그 불법성이 일률적으로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정의 조항에서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위 문구를 삭제하려는 것임

- 고지의무 위반만으로는 보험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고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에 이를 토대로 보험금 청구라는 적극적인 기망행위까지 더해져야 보험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에,³⁾ 보험사기에서의 고지의무 위반은 일반적인 사기에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와는 그 성격이 다르고 오히려 적극적·계획적 기망의 지표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감경인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⁴⁾

-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한 경우를 가중인자로 삼기로 함

-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추가 연구를 거쳐 향후 위원회에서 추가 심의 후 확정하기로 함

- 참고로, 제21대 국회에서 보험 관련 종사자 등의 보험사기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었는데 해당 내용이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당시 법무부에서 "보험 관련 종사자를 엄정하게 처벌하는 문제는 법정형 상향이 아닌 양형의 문제로 접근하는 방향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었음⁵⁾

3)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서는 보험사기행위에 대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의 체결만으로는 보험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

4) 보험연구원 제12회 KIRI 보험법 세미나 자료(2024. 7. 23), 「보험사기 양형기준의 필요성」(https://www.kiri.or.kr/pdf/%EC%A0%84%EB%AC%B8%EC%9E%90%EB%A3%8C/semina20240723_1.pdf)

5)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안, 박재호 의원안)에 대한 정무위원회 검토 보고서」(2022. 11)